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

[시행 2020. 9. 22.] [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207호, 2020. 9. 22., 제정.]

보건복지부(장애인자립기반과), 044-202-3353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보조기기 품목 등) 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품목 및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.

②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는 별표2와 같다.

③ 의지·보조기 기사가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·보조기는 별표1의 "보조기 및 의지(2 06)"로 하되 "기타의지(2 06 30)"는 제외한다.

제3조(사용 용도에 따른 법령 적용) 보조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례에 있어서 보조기기로 볼 수 없으며 본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2020-207호, 2020. 9. 22.>

제1조(시행일)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「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」은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고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「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」에 대한 규정을 타 법령 등에서 준용하는 경우 이 고시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.

별표 / 서식

[별표1]보조기기 품목 분류체계

[별표2]다른 법령에 의한 보조기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